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4차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행정안전부와 대전광역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6. 11. ~ 2027. 3.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 2026. 11. ~ 2027. 3. (5개월)

□ 사업내용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최대 5개월간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 지원내용 : 참여청년 인건비*,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월 20만원, 멘토수당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 시급 11,188원, 월 209시간 개근 시 234만원(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추진절차

❶ 참여기업 모집	➡	❷ 참여기업 심사·선정	➡	❸ 참여기업 약정체결
▸**(진흥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참여희망기업)** 신청서류 제출		▸**(진흥원)** 참여희망기업 현장실사 ▸**(진흥원)** 참여기업 심사·평가 및 최종 선정 통보		▸**(진흥원-참여기업)** 약정체결

⬇

❻ 청년-기업 확정	⬅	❺ 참여청년 면접	⬅	❹ 참여청년 모집
▸**(참여기업)** 참여청년 선발 ▸**(진흥원)** 청년-기업 매칭 확정		▸**(진흥원)** 신청자 참여 적격 여부 검토, 면접 주관 및 지원 ▸**(참여기업)** 면접 실시·선발		▸**(진흥원)**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참여청년 모집 공고 ▸**(청년)** 희망기업을 선택하여 고용24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 11. 5.(목) ~ 모집 기업 충원 시까지(선착순 마감)
※ 모집 기업 인원 충원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모집규모** :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모집

□ **참여대상**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2026. 10. 31. 기준)**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단체**
-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 등)
- ▸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연구기관**
- ▸ **그밖에 조직 설립목적 등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지방정부가 인정한 경우**
 (경제적 활동 없이 단순히 복지·공동체·공익 활동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참여요건**

○ 참여기업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❶~❷)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❶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❷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참여기업 제한기준

○ 참여기업의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
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확인방법) 사회적기업포털 > 현황·성과 > 사회적기업 조회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③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인건비 지원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⑧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참여기업 참여중단

○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중단

○ 참여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청년의 타 기업 연계, 지원 중단, 지원금 정산・환수 등의 조치 예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중단>
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 사업종료 이후라도 인력 대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 적용
③참여기업의 폐업,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성희롱,괴롭힘,산업재해 등) 등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④ 운영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사업 참여 이후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지원개요

□ 지원금 지급 절차

참여기업 ➔ 참여청년, 참여멘토		참여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참여기업
▸**(참여청년)** 본인계좌로 인건비 지급 ▸**(보험납부)** 4대보험료 납부 ▸**(멘토수당)** 참여멘토 본인계좌로 멘토수당 지급	➡	▸**(참여기업) 매월 지원금 증빙서류 제출**	➡	▸**(진흥원)** 정산결과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익월 5일 이내**		**익월 2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급방법)** 멘토수당 및 운영비는 해당월의 재직일수 및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차등 지급

지원항목	지원금액	수령처
인건비	**주 40시간 기준, 임금 234만원** (시급 11,188원, 유급주휴 포함, 세전)	참여기업 법인계좌
운영비	**1인당 월 20만원**	
멘토수당	**1인당 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	**4대보험료율 11.47%, 약 268,080원** (지원금 지급범위 초과 시, 자부담)	

□ 지원 일반사항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참여기업에 차등지급

- 출석률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공가는 출석으로 인정)
- 일자리창조형 인턴 : 참여기업에 지급되는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table>
<tr><th rowspan="2">프로그램 출석률</th><th colspan="2">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th></tr>
<tr><th>운영비</th><th>멘토수당</th></tr>
<tr><td>90% 이상 출석</td><td rowspan="2">20만원</td><td>15만원</td></tr>
<tr><td>70% 이상 ~ 90% 미만 출석</td><td>13만원</td></tr>
<tr><td>60% 이상 ~ 70% 미만 출석</td><td rowspan="2">16만원</td><td>10만원</td></tr>
<tr><td>50% 이상 ~ 60% 미만 출석</td><td>9만원</td></tr>
<tr><td>40% 이상 ~ 50% 미만 출석</td><td rowspan="2">12만원</td><td>7만원</td></tr>
<tr><td>20% 이상 ~ 40% 미만 출석</td><td>6만원</td></tr>
<tr><td>20% 미만 출석</td><td>미지급</td><td>미지급</td></tr>
</table>

<지원금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공통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 통장사본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참여청년 임금	▸참여청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참여청년 근로계약서 ▸참여청년 주민등록등본	▸참여청년 출석부 ▸이체확인증(또는 거래내역서) ▸임금명세서 ▸보험료 고지 내역(건강,국민,고용,산재)
멘토수당	▸멘토 본인 명의 통장사본 ▸멘토 소속기업 재직증명서	▸이체확인증(또는 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멘토 면담일지(주 1회 실시)

※그밖에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자체 서식 등)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4 신청개요

□ 신청 가능 인원 : 기업당 최대 4명

□ 신청유형 : ‘유형 1’과 ‘유형 2’ 중 하나의 유형만 선택 가능

○ (유형 1) 취업형 인턴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

○ (유형 2) 일자리창조형 인턴 ▸ [서식5]신규직무아이템 계획서 필수 제출

- (기업제안형) 참여기업이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신규 직무 아이템을 먼저 제안하고 이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지원하여 팀을 구성

-(청년제안형) 청년 스스로 관심 분야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기반하여 아이템을 제안하고 2~4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신청

❖ **(신규 직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재설계하는 것

유형	기본 직무	(예시) 신규 직무
돌봄	요양, 방문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등
주거	주거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도시 조성	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사 등
로컬푸드	도시락, 밀키트 제공	로컬푸드 식단 코디네이터 등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bik@djbea.or.kr)

□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	서식	필수
1	**참여기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서식1	필수제출
2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2	
3	**참여기업 서약서**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6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3개월 이내	
7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립·지정 증빙서류**	-	
8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회계(세무)사 확인자료 또는 홈택스 발급분	
9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조회기간 2026. 1. 1. ~ 2026. 10. 3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10	**가점 증빙서류**	'[붙임1] 심사기준' 참고	해당 시
11	**신규 직무 아이템 계획서**	서식5	일자리창조형

5 일반사항

□ 참여청년 관리사항

< 참여청년 자격조건 >
○ **(연령기준)** 2026.1.1.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1.2.~2007.1.1. 출생자) ○ **(고용상태)**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 **(지역요건)** 사업 참여기간 동안 대전광역시 거주자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 ❶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❷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❸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❹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❺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 ❻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참여청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 계약조건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별도, 4대보험 의무가입
- 연장근로 : 주 12시간 이내(당사자간 합의 필요)
- 근무내용 : 운영기관에 제출·승인받은 '참여기업 운영계획서'에 따른 업무(근로계약 변경 시 운영기관에 사전 승인 필수)
- 근태관리 : 자체시스템(전산, 수기 출석부 등)을 통해 참여청년 근태현황 관리(매월 운영기관 보고)

○ **(전담인력 지정) 해당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정**

- (자격) 대표이사 및 임·직원
- (역할) 참여청년과 멘토를 총괄 관리, 운영기관에 대한 보고 등 일경험 운영 전반에 협조하여야함
- 전담인력이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멘토 겸직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참여청년 대상 멘토링을 제공할 멘토 지정**

- (멘토자격)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멘토링이 가능한자로서 관련 경력 1년 이상

※(고용 5인 미만 기업) 멘토링이 가능한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 또는 임·직원 중 멘토 선정 가능

※(관련 경력)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도 멘토 선정 가능

- (역할)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월활한 직무수행,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소속의 참여멘토를 지정
- (멘토링 운영) 참여멘토(멘토1인당 참여청년 배정인원 최대4명)는 참여청년에게 주 1회 멘토링 실시 후 면담일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참여청년 수료사항**

○ **(직무교육 참여)** 총 20시간(1일 최대 8시간) 필수 참여

- 교육내용 :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직무 기초역량 강화, 참여청년 직무 분야별 실무교육 및 진로 연계
-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교육 등
- 수료기준 :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참여)** 주 1회 이상 청년매니저와 정기면담(대면·유선·온라인 등)에 필수 참여

- 청년매니저 :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청년의 적응 지원, 고충상담, 진로탐색 및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 **(수료기준)**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의 90% 이상 출근(출석)

- 고용24를 통해 수료증 및 이력확인서 발급 가능
-

□ 사업 운영관리

○ (모니터링)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 참여청년의 고충, 민원 등 특이사항 관리 및 기타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간 재참여 제한

○ (시정지시) 운영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지시를 행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지원 중단 등 조치할 수 있음

6 문의처

□ (운영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지원팀

- 배익균 책임 (042-632-3732) / bik@djbea.or.kr
- 김광식 책임 (042-632-3734)